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(참조 : 해사안전정책과, (330-012) 세종특별자치시 다가2로 94, 전화 044-200-5821, 전송 044-200-5848, 이메일 feksj74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한글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설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(전화: 044-200-5821)로 문의하여 주시기, 보다 구체적인 개정(안)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f.go.kr>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해양수산부공고제2014-10호

「해사안전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15일

해양수산부장관

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대행업자 변경등록 기한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명확히 하며, 「해사안전법」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, 그 밖의 원형 제도 시행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안전진단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등 민원사무 처리절차 개선 (안 제11조, 안 제16조 및 안 별지 제4호서식)

안전진단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필요성이 크지 않은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,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기한을 30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, 기술인력 변경등록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일괄 변경등록 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 처리절차를 개선함.

나.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변경등록 불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(안 별표 8)

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연속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변경등록 불이행 시 제재를 단연 등록취소에 서 열렬 정지로 전환하는 「해사안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함.

다. 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 (안 제33조, 안 별표 4· 별표 9)

안전관리체계 항목의 일부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「해사안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 예정임에 따라 제33조를 정비하고, 별표 4에 따른 인선할 줄 임함으로 항목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함.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(참조 : 해사안전정책과, (330-012) 세종특별자치시 다가2로 94, 전화 044-200-5821, 전송 044-200-5848, 이메일 feksj74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한글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설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(전화: 044-200-5821)로 문의하여 주시기, 보다 구체적인 개정(안)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f.go.kr>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-4호

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

「식품위생법」 제18조 및 「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13-80호)」에 따라, 유전자재조합 콩 FG72,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 및 유전자재조합 변형 COT102 안전성 평가자료를 심사한 결과,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15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품목

1. 승인 품목

대상품목	신청자	개발자	승인번호	승인일
유전자재조합 콩 FG72	바이엘크롭사이언스(주)	Bayer Cropscience LP	제2014-1호	2014.01.09
유전자재조합 옥수수 MON87427	몬산토코리아(유)	Monsanto Company	제2014-2호	2014.01.09
유전자재조합 변형 COT 102	신켄타코리아(주)	Syngenta Crop Protection AG	제2014-3호	2014.01.09

2. 승인 조건

○ 인체 건강 상 새로운 위해요인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.

●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고제2014-1호

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15일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

●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98호

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규칙 일부개정규칙

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